

예산총칙

2024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4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 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502,041,361	15,061,241
일반회계		494,651,747	14,839,552
특별회계		7,389,614	221,688
	기타특별회계	7,389,614	221,688
	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	5,600	168
	의료급여기금	393,694	11,811
	공공실버주택	345,640	10,369
	주차장	6,644,680	199,340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700,000천원(일반 1,500,000, 재해·재난목적 200,000)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"19,800,000천원"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